

5-06-0601 상생미래대연계 상생매담대 통합약정서(판매기업용) - 상환청구권 없는 경우 개정대비표

현 행	개 정 후	비 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포괄한도 거래약정서 (기업용)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추가약정서(기업용) (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용)</p> <p><b>제3조 (발주명세의 전승, 취소 및 변경)</b> ① ~ ② (생 략) ③ 구매기업이 발주명세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득하거나 정당하게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고, 취소에 대하여 은행은 <u>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.</u> ④ ~ ⑤ (생 략)</p> <p><b>제7조 (면책)</b> ① 본인의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의 또는 전산조작오류 등 과실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를 은행에 전송한 경우, 은행이 이를 본인에 의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로 믿고 이에 따라 본인에 대한 대출을 취급한 이상, 은행에게 그에 따른 <u>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합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추가약정서(판매기업용)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,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)</p> <p><b>제4조 (개별대출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)</b> ① (생 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포괄한도 거래약정서 (기업용) (좌 등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추가약정서(기업용) (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용)</p> <p><b>제3조 (발주명세의 전승, 취소 및 변경)</b> ① ~ ② (좌 등) ③ 구매기업이 발주명세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득하거나 정당하게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고, 취소에 대하여 은행은 <u>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.</u> ④ ~ ⑤ (좌 등)</p> <p><b>제7조 (면책)</b> ① 본인의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의 또는 전산조작오류 등 과실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를 은행에 전송한 경우, 은행이 이를 본인에 의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로 믿고 이에 따라 본인에 대한 대출을 취급한 이상, 은행에게 그에 따른 <u>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추가약정서(판매기업용)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,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)</p> <p><b>제4조 (개별대출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)</b> ① (좌 등)</p>	<p>문구 순화</p> <p>문구 순화</p>

<p>② 제1항에 의한 개별대출금의 상환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담보 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귀 행이 동채권의 채무자인 거래처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아 충당하기로 하며, 거래처가 지급기일에 귀 행에게 담보매출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도 본인이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.</p> <p>③ (생 략)</p> <p>추가약정서(자동기한연장용)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) (생 략)</p> <p>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(기업용) (포괄계약) (생 략)</p>	<p>② 제1항에 의한 개별대출금의 상환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담보 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귀 행이 동채권의 채무자인 거래처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아 충당하기로 하며, 거래처가 지급기일에 귀 행에게 담보매출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도 본인이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.</p> <p>③ (좌 등)</p> <p>추가약정서(자동기한연장용)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) (좌 등)</p> <p>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(기업용) (포괄계약) (좌 등)</p>	<p>오타수정</p>
--	--	-------------